

第114回(臨時會)

#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

第2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## 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(案) ..... 1面

### 1.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(案)

의 안	827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1. 8.

제 출 자 : 오필근 의원 외 3인

#### 1. 개정이유

○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날로 대폭 증대되고,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전문분야별로 의안을 분담하여 예비심사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가 1년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의원들이 소속 위원회의 적응기간을 거쳐 전문성을 띠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때쯤이면 임기가 도래하여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활동을 계속성 있게 보장해주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위원 정수에 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 골자

-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있어 궐원(闕員) 발생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(안 제2조)
-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“1년”에서 “2년”으로 연장(안 제5조제1항)

#### 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4조

#### 4. 예산수반사항 : 필요없음

#### 5.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정수에 있어 원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년간”을 “2년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대 의회가 시작되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 <단서 신설>  1. ~ 3. (생략)	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정수에 있어 원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한 위원 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 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. ② (생략)	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----- ----- 2년간 재임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